

國慶日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3572
----------	------

제안연월일 : 2005. 12. 7.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 6. 14)에서 2004년 7월 15일 신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1월 18일 이규택의원이 발의한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소위로 회부함.

나.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 11. 30)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2005. 12. 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국경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국가 기념일로 규정 되어 있는 한글날을 동 법에 의한 국경일로 승격 규정 함으로써 한글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드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國慶日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國慶日에關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慶日에關한法律”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부 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2條 國慶日是 左와 같다.</p> <p><u>3·1節 3月 1日</u></p> <p><u>制憲節 7月17日</u></p> <p><u>光復節 8月15日</u></p> <p><u>開天節 10月 3日</u></p>	<p>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3·1절 3월 1일</u></p> <p>2. <u>제헌절 7월 17일</u></p> <p>3. <u>광복절 8월 15일</u></p> <p>4. <u>개천절 10월 3일</u></p> <p>5. <u>한글날 10월 9일</u></p>